

#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95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6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8월 7일 김혜련의원 외 13명 발의
2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19년 9월 4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혜련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 복지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### 2. 주요내용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이 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(안 제6조의1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# 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

- 개정안은 '17.12.19. 「장애인복지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간의 상충 방지를 위하여 제안되었음.

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(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'17.12.19.개정/시행 '19.7.1.)

- 용어정리
  - '장애등급'→'장애정도'
  - 장애'1~3급'→'심한장애', 장애'4~6급'→'심하지 않은 장애', 장애'1~6급'→'등록장애인'
-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
  - '장애등급별 차등 지원'→'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'에 따라 지원

#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# 가. 개정안의 내용

- 현행 조례상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'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'에서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으로 개정(안 제6조제1항) 하는 내용임.

현 행

개 정 안

제6조(사업의 의무)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6조(사업의 의무) -----  
-----  
-----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받아야 한다.

[별표] <개정 2015. 11. 13.>

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(제5조 관련)

[별표]

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(제5조관련)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 이탈주민
1	장애등급 1~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등급 3~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
3	장애등급 5~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

※ 이 표에서 '미과세대상자'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	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 이탈주민
1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	미과세대상자

※ 이 표에서 '미과세대상자'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나. 서울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임대 현황

- 현재 조례 제2조(적용의 범위)1)에 따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총 물량은 533개소로,
  - 매점은 총 물량 124개 중 장애인이 48개를 우선임대 운영하고 있으며,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중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곳은 없음.
  - 자동판매기는 총 409개소 중 장애인이 131개소를 우선임대 운영하고 있으며,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중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곳은 6개소임.

< 서울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임대 현황 >

(단위 : 개소, '19. 5월말 기준)

구분	총계	장애인 소계	장애인			노인	한부모	기타
			1급	2급	3급 이하			
	533	179	63	112	4	327	22	5
매점	124	48	14	32	2(3급1, 4급1)	64	10	2
자동 판매기	409	131	49	80(6)*	2(3급2)	263	12	3

\*( ) :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개소수

출처: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

1)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적용의 범위 등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3. 시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, 공사 및 공단(이하 "시 산하 공기업"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,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(이하 "매점 등"이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㎡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.

다.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(장애인복지정책과)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원안 동의를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.

### 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장애 2급 이상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변경,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의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9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김혜련, 김정태, 박순규, 권순선,  
김경영, 김용석, 전병주, 오한아,  
강동길, 이영실, 고병국, 여 명,  
최 선, 이동현 의원 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별표 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 
심한 장애인은”으로, “거쳐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					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 대상자	미과세 대상자

※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6조(사업의 의무)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<u>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</u>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<u>거쳐야</u> 한다.</p>	<p>제6조(사업의 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은 ----- ----- ----- <u>받아야</u>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(제5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순위</th> <th>장애인</th> <th>65세 이상 노인</th> <th>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</th> <th>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</th> <th>북한이탈주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<u>장애등급 1~2급</u>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<u>장애등급 3~4급</u>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</td> <td>미과세대상자</td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</td> <td>미과세대상자</td> <td>미과세대상자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<u>장애등급 5~6급</u>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이 표에서 '미과세대상자'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</p>	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이탈주민	1	<u>장애등급 1~2급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2	<u>장애등급 3~4급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3	<u>장애등급 5~6급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	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(제5조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순위</th> <th>장애인</th> <th>65세 이상 노인</th> <th>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</th> <th>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</th> <th>북한이탈주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</td> <td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<u>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/u>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</td> <td>미과세대상자</td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</td> <td>미과세대상자</td> <td>미과세대상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이 표에서 '미과세대상자'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</p>	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	북한이탈주민	1	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2	<u>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이탈주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<u>장애등급 1~2급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<u>장애등급 3~4급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<u>장애등급 5~6급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	북한이탈주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<u>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/u>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대상자	미과세대상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